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9.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발 의 자: 안대국 의원 외 6인(홍복조, 김화덕, 김태형, 원종진, 박왕규, 박정환)
- 발의일자: 2021. 5. 20.
- 회부일자: 2021. 5. 28.
- 상정 및 의결: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1. 6. 9.)

2. 제정이유

아동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달서아이꿈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안 제4조)
- 다. 관리 및 위탁(안 제5조)
- 라. 운영위원회(안 제6조)
- 마. 운영시간 등, 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 이용료의 반환(안 제7조 ~ 안 제9조)
- 바. 자원봉사자(안 제10조)
- 사. 행위의 제한(안 제11조)
- 아. 지도점검(안 제12조)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아동복지법」 제53조
- 비용추계: 대상
- 입법예고(2021. 5. 20. ~ 2021. 5. 31.)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조례안은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18세미만 아동(제3조제1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법 제53조)’로서 <(가칭)달서아이꿈센터(이하 ‘센터’)>를 구 차원에서 새로이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된 제정 조례안. 동 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그러나 조례를 공포하면, 집행부는 시행일로부터 조례에 규정된 행정을 바로 펼쳐야 하는 바, 아래 몇 가지 관점에서 동 조례 제정의 적절성 여부까지 포함해 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

1) 의원 조례 발의 적절성 여부

- 집행부가 제출한 동 센터의 건축 개요 자료에 따르면, 집행부는 ① 달서구 죽전동 71-6번지에 ② 연면적 2,480.59㎡(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센터를 2022년 2월까지 신축해 ③ 이 곳에 ④ 영아 실내놀이터(119㎡) 보드게임방(57㎡), VR체험실(120.12㎡)은 물론 ⑤ 장난감도서관(126.92㎡)·다함께돌봄센터(104.56㎡)·가족소리홀(153.68㎡)·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89.32㎡) 등 다양한 시설들을 배치(配置)할 계획.
- 그러나 조례안에서는 센터 위치를 “~관할 구역에 설치(안 제3조)”로 구체화하지 않고 있으며, 센터 내 세부 시설에 대해 “~실내놀이터, VR체험실,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안 제2조제1호)”만 규정해, 장난감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집행부가 설치하려는 시설들을 제외하고 있는 바, 이는 집행부 행정 방향에 대하여 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배분 원칙을 위배하는지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개연성 있음.

2) 센터 내부 시설인 <장난감도서관>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방식 적절성 여부

- 안 제5조에서 동 센터를 민간에 위탁 운영할 근거 규정을 마련. 집행부는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센터 내 (부속)시설로 운영할 계획인 바, 따라서 집행부가 선정한 본 센터 수탁자는 곧 이들 <장난감도서관>과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가 됨.
- 그러나 동 센터 내 시설인 이들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경우, 현행 「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는 당시에 본 조례안의 센터 수탁자가 아닌 제3의 수탁자에게 이들 시설을 위탁하고자 하였던 바, 결국 본 조례안 규정은 현재 시행중인 위 2개 조례 규정과 상호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
- 따라서 동 조례안의 규율 대상(수탁자 포함)과 현 「달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달서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규율하는 대상(수탁자 포함)간의 관계를 새로이 규정(정비)할 필요가 있음.

3) 안 제5조(관리 및 위탁)규정과 안 제10조(자원봉사자)규정의 적절성 여부

-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구청장이 갖는 동 센터 운영 권한이 민간 수탁자에게 넘어 가고, 대신 센터 운영비용을 구가 지원하게 됨. 한편 자원봉사자 운용과 관련해서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자원봉사수요자는 이들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수준의 금전적 지원은 할 수 있음.
- 그러나 조례안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을 (수탁자가 아닌) 집행부가 부담해 수탁자에게 자원봉사자를 지원(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하도록 함은 결과적으로 현행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규정과 상충될 개연성 있는 바,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

4) 안 제8조(이용료의 징수 및 면제)규정과 상위법 규정과의 적절성 여부

-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제53조) 및 동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르면,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부터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용료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감면 대상 폭을 넓게 하여) 동 시설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안(안 제8조)경우 위 상위법 취지와 달리 이용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면서(제1항), 감면(減免) 규정은 없고 대신 면제(免除) 관련 규정은 마련했으나 그 대상 폭을 한정해 규정(제2항)한 바, 동 조문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추가 논의도 필요.
- 한편, 안 제8조제1항에서 이용료 수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재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이용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 취지와 상충될 개연성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필요.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